


이사회 규정

 대덕전자 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덕전자(주)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 시 까지로 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대행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주식배당, 현금배당, 중간배당의 결정
- (13)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대한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의 보수
- (16) 최대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해야 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사업계획 수립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5) 공동대표의 결정
-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8) 급여체계, 상여, 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 (9)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4)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의 결정
- (15) 재해예방을 포함한 연간 안전보건 관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16) 매분기 결산 후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 (17) 기타 부의해야 할 주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시설투자 및 출자
 - 가. 신규 토지 및 건물 취득, 별도 공장의 신설,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 나. 1억원 이상의 출자 및 타회사 주식 취득 또는 처분
 - 다.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가. 토지 및 건물의 처분

나. 회사 일부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 일부 영업의 양수

다. 5억원 이상의 자금차입

라. 1억원 이상의 자금대여, 가지급

마.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

바. 모든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사.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0) 자기주식의 소각

(1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사항 및 금액한도

(12) 1천만원 이상의 기부, 후원, 협찬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제공 (금전, 현물 제공 및 유·무형자산 사용, 사용편의 제공도 포함)

(13) 기타 부의해야 할 주요 재무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3) 이사의 경업 및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
5. 연간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성과
6.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방침
7.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소집 시 지주회사 통지)

이사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의거 이사회가 소집되면 지체 없이 소집내용을 지주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2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3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지원)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